테마칼럼

책과 세상 | 신재생에너지 | 문화 상상력 | **도시와 인간**

경제특구가 가야 할 길

유병권

"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제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 규제가 5000여개나 되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89개나 되는 규제특례법을 제정할만도 하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못지 않게 이같은 특구가 갖는 문제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라는 토지이용제도를 쓰고 있다. 도입된 지 100여년에 이르렀으니 뿌리를 내린 셈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사람들이 정해진 용도에 맞게 토지를 이용해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도시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같은 개발용도 지역이 많고, 농촌에는 농업,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같은 보전용도 지역이 많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바탕위에 입체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구를 지정하기도 하고, 도시공간이 과도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용도지역제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용도를 미리 정해 토지이용에 대한 예측력을 높여 토지를 질서있게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자본가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일단 용도가 정해지면 공동체보다는 토지소유자 위주로 토지가 이용되기 십상이고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에는 도시자본이 몰리면서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비난도 있다.

제도적으로는 용도지역 위에 규제강화나 완화를 목적으로 이중 삼중의 특별법적 규제가 덧씌워짐으로써 관리만 복잡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지역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특구가 그렇다.

환경보전, 문화재나 군사시설의 보호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존의 용도지역 위에 여러개의 지역·지구를 지정함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10여개의 규제지구가 중첩적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다. 규제 내용이 애매모호하기도 하다. 정부 안에서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조직도 만들고 법도 만들어서 운용하고 있지만 용도지역제 하에서 근본적으로 지역·지구의 신설을 막는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경제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 규제가 5000여개나 되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89개나 되는 규제특례법을 제정할만도 하다. 그러나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못지 않게 이같은 특구가 갖는 문제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특구가 너무 남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230여개나 된다. 숫자로만 보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한 개씩 있는 셈이다. 역설적이게도 경제여건이 좋지 않을수록 이러한 특구는 늘어나고 낙후지역일수록 지정 요구는 거세어진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 모두 투자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세금 감면, 개발절차 간소화, 정부의 예산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경제특구가 이처럼 늘어난 데는 타당성 조사가 부족한 가운데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정을 요구한 탓도 있다. 그러나 들어올 자본은 정해져 있는데 유사한 특구가 여기 저기 지정되어 있다면 선택과 집중이 어려울 것이 뻔하다. 게다가 개발이 지연되다 보니 재산권 침해시비까지 발생하고 있다. 지가만 상승시켜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제도를 처음 구상한 '내일의 도시'의 저자인 피터 홀(Peter Hall) 교수는 경제특구를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다. 어쩌면 경제특구 대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지 모른다. 유사한 특구가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현명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구가 지금보다 훨씬 신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한번 지정되면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특구제도가 형식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구의 성격에 따라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경쟁력분석, 운영체제분석 등을 통해 위치와 규모, 유치산업 등을 전략적이고 신축적인 시각으로 잘 살펴보고 고쳐 나갔으면 한다.

끝으로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 특구가 지정되고 운영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은 이미 지역간 경쟁시대로 돌입했다. 이제는 지역단위의 종합계획 하에 특구가 지정되고 보완되어 나가야 한다. 계획이 너무 많아 어느 계획이 기초가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공무원들에게 계획수립 자체가 귀찮은 일이 되었다. 계획의 실효성은 뒷전에 있다.

그러므로 지역계획의 틀 속에서 특구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더 발전적일 것 같다.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을 주도한다기보다 협력적 위치에 서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국가건축정책기획단 부단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軍 비행장 '소음 기준' 상향 당장 철회하라

정부와 한나라당이 전국 군용(軍用) 비행장 소음 피해 지원 기준을 크게 축소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이 3일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군용 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소음 피해 지원 기준을 '85웨클(항공기 소음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요구해온 '75웨클 이상'을 훨씬 상회한 것이다.

당정이 이 같이 소음 피해 지원 기준을 축소한 것은 75웨클 이상으로 할 경우 광주공항만 하더라도 대상 주민이 15만 명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엄청난 예산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85웨클 이상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탁상 논리'의 전형이다.

정부의 방침대로 85웨클이 적용되면 피해 주민 가운데 90% 이상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의 경우 피해 예상 주민 15만 명 중 대상자는 겨우 7000~1만 명 선에 그친다. 대다수 피해 주민은 예전처럼 소음 고통 속에서 계속 생활할 수밖에 없다. 현실을 무시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당정의 상향조정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항공기 소음이 80웨클 이상은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특히 국방부가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 2009년 12월 이후에도 주민 공청회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주민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따라서 '85웨클 이상'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당정은 소음 피해 주민들의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실상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동 걸린 F1대회 이번엔 제대로 해야

'세계 최대의 스피드 축제'인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2일 개막 227일을 앞두고 '폭풍 질주'를 위한 힘찬 시동을 걸었다. F1조직위원회는 이날 서울에서 '론칭쇼'를 열고 올해 대회 일정과 입장권 판매 등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F1대회는 오는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영암에서 열리며, 총 20라운드로 치러지는 월드챔피언십 시리즈 중 16번째 라운드로 개최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올 F1대회를 위해 일찍부터 홍보와 마케팅을 시작했다"며 "이번 그랑프리가 흥행과 운영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회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된 준비 소홀, 흥행 실패, 운영 미숙 등 갖가지 문제점들을 이번에는 완벽히 개선해 성공 개최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입장권 판매가 60%에도 미치지 못해 주민들을 동원하는 헤프닝까지 벌였던 관중문제도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입장권 가격을 30%에서 최고 50%까지 낮춰 대중화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는 달리 성공 개최에 수많은 걸림돌이 놓여 있는 게 사실이다. 우선 F1 운영법인인 카보(KAVO)의 정영조 전 대표의 해임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등 원년대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가 경기장 추가 공사비 308억 원의 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다 대회 운영비로 200억 원만 책정해 특단의 지원 대책이 없는 한 빛을 내서 F1을 치뤄야 할 형편이다.

지난 대회에서 '엉망'으로 평가된 숙박과 교통, 편의시설 등 인프라 구축도 당장 '발등의 불'이다. 기업에 대한 마케팅과 후원, 타이틀 스폰서 확정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번 F1의 성공 여부는 전남도와 조직위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준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종교칼럼

지장

'불가설 불가사의 불가사량'의 세계

콜롬비아대학과 예일 의과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뇌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브라이언 와이스가 지은 전생치료법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한다.

브라이언 와이스는 어려서부터 신심 깊은 기독교 신앙인으로 전생이나 윤회 및 환생을 전혀 믿지 않는 분이었다.

그런 그가 환자들의 정신과 치료를 경험하면서 윤회와 전생 및 환생에 얽힌 믿지 못할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윤회, 전생을 믿는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다.

세 남매를 낳아 기른 어머니가 갓 태어난 딸을 처음 팔에 안은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아이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딸에 대한 지속적인 짜증과 반감을 느끼며 어머니 자신도 스스로 몹시 당황했다.

딸아이도 어려서는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반항과 갈등이 도를 더해 갔다. 마주 보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서로에게 화가 치밀고,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20여 년을 두 모녀는 앙숙으로 살아왔다.

급기야 엄마는 가슴 답답함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심각한 상태에서 브라이언 와이스의 병원을 찾게 된다.

전생요법 치료를 통하여 두 사람의 전생을 살펴보니 두 사람은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연적으로 살아왔고 현생에서 아버지와 딸로, 어머니와 딸로 만나 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 딸이 태어날 때 출혈과 쇼크로 어머니가 죽음 직전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전생 치료법으로 서로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현장 실화 한 토막.

"두 아이의 어머니이면서 치과의사인 아내는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지옥과도 같은 나날이었다. 남편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이것저것 요구를 하고 매사에 반대만 일삼고, 일마다 트집을 잡고, 아내의 인격을 사정없이 깎아내렸다. 몇 차례 별거도 해 보았고, 임신을 하지 않으려 해도 남편은 막무가내로 아기를 갖게 했다."

"전생을 살펴보니 지금의 남편은 전생의 아빠였다. 엄마가 자기를 낳다가 죽어 버렸고, 그때부터 아빠는 딸을 구박하고 미워하며 노예처럼 부려먹고, 때리고 가두면서 괴롭혀 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런 아버지가 죽던 날 딸은 날아갈 듯 기쁘고 홀가분했다. 이런 인연이 금생에 다시 부부로 만나 서로 힘들게 한다."

이처럼 우리 중생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믿고, 볼 수 없고 들을 수없는 세계에는 믿으려 하지도 않고 관심조차도 없다.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세계가 다인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성인께서는 한 제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알고 느낄 수 있는 세계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비교한다면 '네 손톱 위에 올릴 수 있는 흙과 우주에 있는 흙과 같다'고."

또 "그러니 어리석은 중생들이여! 자만하지 말라. 똑똑하다고 우쭐대지도 말라. 무엇을 잘 알고 있다고 거만 떨지도 말라. 그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그대 손톱 위에 올려진 흙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하여 성인들께서는 이 법계를 가리켜 '불가설 불가사의 불가사량(不可說 不可思意 不可思量)'이라 가히 말로써 다 설할 수 없고, 가히 지식으로 다 알 수가 없으며 가히 생각으로 헤아려 알 수가 없다"고 가르치셨다.

〈무등산 증심사 주지〉

기고

이성규

세법 잘 따지면 돈 번다

지난해 말 공포된 각종 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의 생활세금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세법 변화에 따라 주어지는 세제지원 혜택과 주의해야 할 점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원천세 분야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가 확대된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8%에서 6%로 낮아져 올해부터 서민층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기부금 특별공제 대상 확대도 눈에 띈다.

종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기부금만 특별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본인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이 지출한 기부금도 특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다자녀 추가 공제가 자녀 2명인 경우 연 50만원에서 100만으로, 자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1명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득세법 내용 중 주의해야 할 세무정보도 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거래가 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해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허위계약서(다운계약서 등)를 작성하면 계약서상의 거래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액을 비과세·감면 대상세액에서 차감 당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종전에는 조세 불복절차에서 조세전문가인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만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배우자 및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조세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어려운 소액사건 납세자들의 권익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개정 조항도 눈에 띈다. 기존 규정상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사람은 조기결정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분이 개정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사람이라도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 내용 중 이의가 없는 과세표준 및 세액부분에 대해서는 조기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의 이의 없는 부분 세액에 대한 미납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각 분야별 세법들이 개정됐다.

올해 달라지는 생활세금 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에게 세제지원의 혜택이 돌아가고, 납세자 권익이 향상되며,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까지 개선됐으면 한다. 〈광주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장〉

無等鼓

검은 돈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돈을 받은 스타들이 떨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시발은 캐나다 출신 여가수 넬리 퍼타도가 카다피 일가를 위한 공연 대가로 100만달러를 받았다고 고백한 것이 계기가 됐다. 퍼타도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난 2007년 이탈리아의 한 호텔에서 '카다피 무리들' 앞에서 45분간 공연한 대가로 100만달러를 받았다"며 "이 돈을 기부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퍼타도의 고백으로 카다피 일가로부터 돈을 받은 스타들이 "독재자의 돈을 기부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이름이 거론되는 스타에는 머라이어 캐리, 비욘세, 어셔, 50센트 등 내로라하는 뮤지션이 포함돼 있다. 머라이어 캐리는 2008년 카다피의 넷째 아들 무타심이 카리브해 고급 휴양지에서 연 송년파티 공연 대가로 1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비욘세와 어셔도 거액의 공연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대 170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카다피 일가의 재산을 감안하면 짧은 공연 대가로 스타들에게 건넨 100만달러는 푼돈에 불과할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평생 만져보기 힘든 액수인데다 카다피의 돈이 부정하게 축재된 '검은 돈(블랙머니)'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흔히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은 돈에 차별을 둘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블랙머니나 클린머니를 구별하지 않는 돈의 습성을 얘기한 것이다. 그렇다고 검은 돈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전설적인 영국 그룹 '퀸'을 비롯한 세계적인 밴드들은 1980년대 남아공 정부가 후원하는 공연에 참석한 후 "아파르트헤이트(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한다"며 출연료를 전액 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고 하지만 갈수록 검은 돈을 쫓는 시류가 걱정스럽다. 검은 돈이 더 잘 유통된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양심이라는 거름망을 사용한다면 조금이라도 걸러내지 않을까 싶다. /장필수 사회부차장 bungy@

세균 범벅 찜질방 단속 근거 마련해야

회사와 집의 거리가 멀어 야근 후 찜질방에서 토끼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

찜질방에서는 찜질방에서 주는 옷을 입게 된다. 물론 세탁해 놓은 옷이기는 하지만 입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옷을 입는다는 느낌이 들어 그다지 상쾌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최근 보도를 통해 찜질방 10곳 가운데 8곳에서 빌려주는 옷이 세균투성이라는 내용을 접하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법 규정상 찜질방에서 빌려주는 옷에서 세균이 검출돼도 제한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찜질방은 서민들이 즐겨 찾는 여가·숙박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전국민이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찜질방 세균 안전 문제에 대해 국민 위생보건차원에서보다 명확한 지침과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하겠다.

▲김덕용·광주시 북구 오룡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